

1. 의결주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채무조정에 포섭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협약체결을 통해 통합채무조정의 기반을 마련한 바 이를 명문화하고, 관련 연체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제55조)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신규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채무조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 가능 자료·정보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체납 관련 자료·정보 추가 (제59조)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체납 관련 자료·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제59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 연체·채납 관련 자료·정보: 국세청장·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 16. (생 략) <u><신 설></u> 1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 ----- ----- ----- -----. 1. ~ 16. (현행과 같음) 17. 「 <u>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 한 법률</u> 」에 따른 한국장학재 단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자료 · 정보 제공의 요청)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5 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 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u><신 설></u>	제59조(자료 · 정보 제공의 요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 법</u> 」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 자금 대출의 연체 · 체납 관련 자료 · 정보: <u>국세청장 · 한국 장학재단 이사장</u>